

CDM 사업관련 용어 및 약어

☐ 기후변화협약

기후변화 문제에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'92년 리우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 '94년 3월에 발효되었고, 2007년 12월 현재 192개국이 가입하였으며, 우리나라는 '93년 12월 24일에 가입하였음. 본 협약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“공통의 차별화된 책임(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)” 원칙과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 강조하고 있으며, 부속서 I 당사국(선진국)은 '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

☐ 교토메커니즘

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보조수단으로 청정개발체제(CDM), 공동이행(JI), 배출권거래(ET)가 포함되며,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메커니즘 운영방식 최종 합의하였음

- 청정개발체제(CDM) : 선진국(의무부담국가)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
- 공동이행제도(JI) : 선진국 A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A국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
- 배출권거래제(ET) :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배출쿼터를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

☐ 교토의정서

제3차 당사국총회(1997년, 일본 교토)에서 채택된 의정서로서,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

- 목표연도 : 2008 ~ 2012년(1차공약기간)
- 대상국가 : 38개국(협약 부속서I 40개국 중 터키, 벨라루스 제외)
- 온실가스 : CO₂, CH₄, N₂O, HFCs, PFCs, SF₆ 6종류
- 감축목표 : 온실가스 배출량을 '90년 대비 평균 5.2% 감축
- ※ EU:-8%, 미국:-7%, 캐나다·일본:-6%, 러시아:0%, 아이슬란드:+ 10%

청정개발체제(CDM), 공동이행(JI), 배출권거래(ET)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수단, 이른 바 교토메커니즘 도입하였으며,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,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'90년 선진국 전체의 55% 이상을 차지할 경우, 90일 이후 발효된다. '07.10월 현재 175개국 비준, 선진국의 경우 CO2 배출량의 61.6% 차지함

☒ **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(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: SBSTA)**

당사국 총회와 보조 기관에 온실가스배출통계 방법론,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을 포함하는 과학·기술 문제에 관한 자문 제공하며, 매년 2회(1회는 SBI와 동일 기간, 나머지 1회는 COP과 동일 기간) 개최됨

☒ **AAU (Assigned Amount Unit)**

초기감축목표로서 국가에 할당되는 배출량이며, CO2 ton으로 정의됨

☒ **추가성(Additionality)**

교토의정서 12조 5항(b)와 (c)에 의하면 청정개발체제에서 각 프로젝트에 의한 배출 감축량은 실질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효과적이어야 하고, 그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성이 있어야 함. 추가성의 종류는 환경적 추가성, 재정적 추가성, 기술적 추가성 등이 있음

☒ **신규조림(Afforestation)**

植木, 파종 및 다른 방법을 통하여 산림이 없던 토지를 산림지역으로 변화시키는 토지 이용의 변화

☒ **부속서 A**

교토의정서가 지정한 6가지 온실가스과 그 가스들을 배출하는 분야 및 배출원 목록

☒ **부속서 B 국가**

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I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39개의 선진국

☒ **부속서 I 국가**

기후변화협약에서 2000년까지 '90년 이산화탄소 발생수준으로 구속력 없이 지구 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41개의 선진국

☒ 부속서 II국가

부속서 I국가에서 동구권국가가 제외된 국가군(OECD와 EU)으로, 온실가스감축 노력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짐

☒ 베이스라인(Baseline)

CDM 사업 없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부문 및 발생원으로부터 지구온난화가스 발생량을 나타내는 시나리오

☒ BAU (Business-as-usual)

현재의 중요 정책 및 사업의 지속을 의미하며, 주변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되, 핵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

☒ CER (Certified Emission Reduction)

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저감분의 단위이며, CO2톤으로 표시

☒ 당사국 총회(Conference of the Parties, COP)

기후변화협약관련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,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, 1년에 1회 개최됨

☒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 (Conference of the Parties/Meeting of Parties: COP/MOP)

교토의정서와 CDM 사업과 관련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, CDM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권한 가짐

- CDM 집행위원회의 정차에 대한 결정
- CDM 집행위원회가 신임하는 운영기구 및 신임기준에 대한 결정
- CDM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연차 보고서의 검토
- CDM 사업과 CDM 사업 운영기구의 지리적 배분에 대한 검토

☒ CDM집행위원회 (Executive Board: EB)

CDM집행위원회는 CDM 사업의 운영규칙을 만들고, CER발급, 승인 등을 수행하게 되며, 그 구체적인 기능은 아래와 같음

- CDM 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COP/MOP에 제언
- 베이스라인, 모니터링 및 사업 경계에 관한 방법과 가이드라인 승인
- 소규모 CDM 사업 정의나 해당사업에 관련한 단순한 절차에 관한 규정 검토
- CDM 사업 운영기구 지정 관련 업무
- CDM 사업의 지리적 배분에 관한 COP/MOP에 보고
- 각종 절차와 방법, 가이드라인 결정전에 적어도 8주간의 의견수렴 이행
- CDM 투자가에 CDM 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

☒ 국가 CDM 사업 승인기구(National Authority: NA)

CDM 사업 유치국가, 즉 개도국의 CDM 사업 승인기구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CDM 사업을 승인하고, 제안된 CDM 사업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도를 평가하여 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이고, CDM 사업 투자국의 승인기구는 CDM 사업을 승인하는 기능이 있음

☒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(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, IPCC)

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기 위하여, 1988년 세계 기상기구(WMO)와 유엔환경계획(UNEP)에 의해 설립됨

☒ CDM 사업 운영기구 (Designated Operational Entity: DOE)

CDM 집행위원회로부터 신임을 근거하여, COP/MOP의 지정을 받아, CDM 사업이 의정서 12조의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시키려는가를 점검하고, 해당사업에 수반하는 추가 배출저감량의 인증작업을 수행하는 법인 내지 국가 조직

☒ 도서국가연합(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, AOSIS)

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42개국의 해수면이 낮은 저지대 및 섬나라들의 연합체

☒ Donor/Investor

개발도상국에 지구온난화가스배출을 감소시키는 CDM 사업에 투자하는 부속서 I국가, 기관 및 개인

☒ **베를린 위임사항(Berlin Mandate)**

제1차 당사국총회시 결정사항으로, 1997년(제3차 당사국 총회)까지 2000년 이후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정하도록 함

☒ **ERU (Emission Reduction Unit)**

교토의정서 제6조에 정의되어 있는 JI(Joint Implementation)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저감분 단위이며, CO₂톤으로 표시됨

☒ **이행기간(Commitment period)**

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으로 교토의정서에는 5년 단위로 의무 이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

1차 의무 이행기간	2차 의무 이행기간	3차 의무 이행기간
2008 ~ 2012	2012 ~ 2017	2018 ~ 2022

☒ **이행부속기구(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: SBI)**

당사자 총회의 효과적인 협약 이행 상황 평가 및 검토 지원하는 기구 (개최는 SBSTA와 동일)

☒ **시장경제전환국가(Economies in Transition: EIT)**

부속서 I국가 중 중부 및 동부유럽과 구소련연방 소수국가들로서 벨라루스, 불가리아, 에스토니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루마니아, 우크라이나, 크로아티아, 슬로바키아, 슬로미니아 등 11개국임

☒ **Fungibility**

세 가지 다른 교토메커니즘으로부터 발생된 온실가스 저감분은 서로 상호 교환가능하고 서로 대체 가능함

☒ **자연감축량(Hot air)**

의무의행 당사국내에서의 자연감축량을 의미함. 감축의무를 받은 선진국 중에서 러시아나 시장경제 전환국가들은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의무이행 기준년도인 1990년 배출량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량 자연 감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

☒ **지구온난화가스 (Greenhouse gas: GHG)**

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한 지구온난화가스들로서, CO₂, N₂O, HFCs, PFCs와 SF₆가 포함됨

☒ **지구온난화지수 (Global Warming Potential: GWP)**

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온실기체가 대기 중에 방출된 후 특정기간 동안 그 기체 1kg의 가열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척도임. 100년을 기준으로 CO₂를 1로 볼 때 CH₄가 21, N₂O가 310, HFCs가 1,300, PFCs가 7,000, SF₆가 23,900됨

☒ **토지이용, 토지이용 변경 및 산림 (Land Use, Land Use Change and Forestry: LULUCF)**

토지이용, 토지이용 변경 및 산림부문

☒ **공적개발원조/ 정부개발원조 (Official Development Aid: ODA)**

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(또는 국제기구)에의 원조를 말하며, 증여나 차관,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취함

☒ **CDM 사업 유치국가(Host Party)**

CDM 사업이 수행될 비부속서 I 국가

☒ **Leakage effect**

CDM 사업범위 밖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거나 감소되는 효과

☒ **Project Participants**

CDM 사업을 개발하는 주체(자금원을 조달하는 회사, 지역 NGO 등)

☒ **비준(Ratification)**

협약서/의정서의 채택사항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선언

☒ **RMU (Removal Unit)**

부속서 B국가 내에서 수행되는 토지이용, 토지이용변경 및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의 단위로써, CO₂톤으로 표시

☒ 서명(Signature)

협약/의정서의 채택사항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

☒ 이해당사자(Stakeholders)

CDM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, 단체 또는 개인

☒ 지구환경기금(Global Environment Facility: GEF)

1991년에 개도국의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GEF는 생물다양성, 기후변화, 물자원, 토질저하, 오존층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

☒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(IPCC: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)

1988년에 세계정상기상기구(WMO)와 유엔환경계획(UNEP)에 의해 설립되어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·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